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982
----------	-------

발의연월일 : 2026. 1. 12.

발 의 자 : 서미화 · 최혁진 · 정혜경
김교홍 · 허영 · 박상혁
박민규 · 이용선 · 송재봉
문진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요양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준요양기관의 위생관리·시설요건 등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고, 법률에 준요양기관의 위생관리·시설요건을 명시하고 있지 아니한 상황임. 이로 인하여 준요양기관에서 사용·판매·대여·회수되는 의료·보조기기 등 장비의 세척·소독 불량, 오염구역 미분리, 소독이력 미보관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환자 간 교차감염의 위험을 초래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요양기관과 준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거나 속임수로 보험급여를 받는 행위만을 제재하고 있을 뿐, 본인일부부담금 면제·할인, 금품·편의 제공을 통한 환자 유인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한 부당유인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이 없어 부당유인행위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끼치더라도 이를 막을 수단이 없는 상황임.

이에 준요양기관의 위생·설비·인력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감염 예방 및 소독이력 관리 의무를 강화하며, 위반 시 업무정지, 준요양기관 등록 제외 등 제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려는 것임. 또한, 준요양기관이 환자를 유인하거나 수수료를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업무정지, 준요양기관 등록 제외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와 공정한 요양질서 확립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제49조의3 및 제98조의2 신설 등).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2 및 제4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준요양기관의 위생·설비 기준) ① 준요양기관은 요양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제공·대여·판매하는 장비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및 소독·세척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오염구역(장비를 소독·세척하는 구역 및 소독·세척이 완료되기 전의 장비를 보관하는 구역을 말한다)과 청결구역(소독·세척이 완료된 장비를 취급하는 구역을 말한다)을 물리적으로 분리하여야 한다.

② 준요양기관은 사용·제공·대여·판매한 장비를 요양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시 사용·제공·대여·판매하는 경우 그 장비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척·소독·건조·검사 및 보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준요양기관은 요양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제공·대여·판매하는 장비의 위생상 위험이 확인된 경우 해당 장비를 즉시 격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그 사실 및 조치 내역을 공단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준요양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시설을 소독하여야 하며, 소독일시, 소독 방식, 소독 책임자 등의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관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 준요양기관은 종사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위생관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9조의3(준요양기관의 환자 유인행위 등 금지) ① 준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요양비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2. 금품, 향응, 교통편의 또는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3. 환자나 이용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금전, 물품 또는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4. 제3자를 통하여 환자나 이용자를 소개·알선·유인하거나, 그에 대한 대가로 금품 또는 수수료를 지급·약속하는 행위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방법으로 환자 또는 이용자를 유인·알선하는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준요양기관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8조의2(준요양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준요양기관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준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준요양기관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사실을 공단 및 심사평가원에 알려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9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3. 제49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위반한 경우
4. 제49조의3제1항을 위반한 경우
5. 해당 준요양기관의 종사자가 제49조의3제2항을 위반한 경우
6. 제97조제2항에 따른 명령에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거나, 소속 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7.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비를 부담하게 한 경우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준요양기관을 준요양기관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사실을 공단 및 심사평가원에 알려야 한다.

1. 업무정지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2.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준요양기관 등록을 한 경우

④ 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에 관하여는 제9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요양급여”는 “요양 제공”으로, “요양기관”은 “준요양기관”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15조제5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49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환자 또는 이용자를 유인·알선한 자

제119조제4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49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위반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등록된 준요양기관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4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49조의2(준요양기관의 위생 · 설비 기준) ① 준요양기관은 요양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 · 제공 · 대여 · 판매하는 장비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및 소독 · 세척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오염구역(장비를 소독 · 세척하는 구역 및 소독 · 세척이 완료되기 전의 장비를 보관하는 구역을 말한다)과 청결구역(소독 · 세척이 완료된 장비를 취급하는 구역을 말한다)을 물리적으로 분리하여야 한다.</u> <u>② 준요양기관은 사용 · 제공 · 대여 · 판매한 장비를 요양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시 사용 · 제공 · 대여 · 판매하는 경우 그 장비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척 · 소독 · 건조 · 검사 및 보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u>

③ 준요양기관은 요양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제공·대여·판매하는 장비의 위생상 위험이 확인된 경우 해당 장비를 즉시 격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그 사실 및 조치 내역을 공단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준요양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시설을 소독하여야 하며, 소독일시, 소독 방식, 소독 책임자 등의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관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 준요양기관은 종사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위생관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제49조의3(준요양기관의 환자 유인행위 등 금지) ① 준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

<신 설>

는 아니 된다.

1. 요양비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2. 금품, 향응, 교통편의 또는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
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3. 환자나 이용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금
전, 물품 또는 편의를 제공하
는 행위

4. 제3자를 통하여 환자나 이용
자를 소개·알선·유인하거
나, 그에 대한 대가로 금품
또는 수수료를 지급·약속하
는 행위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
지에 준하는 방법으로 환자
또는 이용자를 유인·알선하
는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준요양기관을 위
하여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

제98조의2(준요양기관에 대한 시
정명령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은 준요양기관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한을 정하여 시정
을 명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준요양기
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준요양
기관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
부장관은 그 사실을 공단 및
심사평가원에 알려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시
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9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3. 제49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
지를 위반한 경우

4. 제49조의3제1항을 위반한 경
우

5. 해당 준요양기관의 종사자가
제49조의3제2항을 위반한 경
우

6. 제97조제2항에 따른 명령에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
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거

나, 소속 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
피한 경우

7.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
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비를 부담
하게 한 경우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 해당 준요양기관을 준요양
기관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보
건복지부장관은 그 사실을 공
단 및 심사평가원에 알려야 한
다.

1. 업무정지처분을 2회 이상 받
은 경우

2.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준요양기관 등록을
한 경우

④ 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에 관하여는 제9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요양급여”는 “요양 제공”으로,
“요양기관”은 “준요양기관”으로

제115조(벌칙) ① ~ ④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 (생략) <u><신설></u> 3. 4. (생략) 제119조(과태료) ① ~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략) <u><신설></u> 4. ~ 6. (생략) ⑤ (생략)	<u>본다.</u> <u>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u> 제115조(벌칙)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1. 2. (현행과 같음) <u>2의2. 제49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환자 또는 이용자를 유인·알선한 자</u> 3. 4. (현행과 같음) 제119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1. ~ 3. (현행과 같음) <u>3의2. 제49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위반한 자</u> 4. ~ 6.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	--